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514 |
|----------|-----|

2024. 3. 22.(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나. 발의일자 : 2024년 3월 5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3월 6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3월 14일

-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고영국 소방본부장)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안전체험관 내 수난체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조례에 반영하고, 안전체험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주민이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장’을 신설
- 안전체험관의 설치·위치·운영시설 및 기능 등(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 안전체험센터의 개관·휴관, 이용료(안 제11조 및 제12조)
- 수난체험센터의 개관·휴관,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등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보험가입,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등(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 (김홍식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세월호 사고, 오송지하차도 사고 등 도민의 수난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충북안전체험관에 건립 중인 수난체험센터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 총 15개 조문으로 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현행 조례를 제1장에서 제4장으로 구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하고, 안전체험관을 안전체험센터와 수난체험센터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체험관 운영시설을 안전체험센터 및 수난체험센터로 규정함.
- 안 제5조(기능)에 생존수영 및 수난안전체험 관련 사항을 신설함.
-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수난체험센터 운영시간,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4. 2. 2. ~ `24. 2. 22.)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제정안은 총 제4장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난체험센터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장으로 구분하여 안전체험관의 일반적인 사항과 안전체험센터, 수난체험센터에 대해 도민이 알기 쉽게 구성함.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4. 검토의견

○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도민의 수난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충북 안전체험관에 건립중인 수난체험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별표'에 따른 일반수영 이용료의 적절성 여부, 수난안전체험의 종류와 이용료의 적절성 여부 및 운영 계획, 생존수영교육 이용료 산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난체험센터 개관시기 및 운영 계획(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응능력을 높이고 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 및 대응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241 일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시설) 체험관은 안전체험센터 및 수난체험센터로 운영한다.

제5조(기능)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화재안전, 생활안전, 지진안전, 어린이안전, 응급처치 등 안전체험 및 교육
2. 생존수영 및 수난안전체험을 통한 수상에서의 생존법 교육
3. 도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4.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5.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력배치) 도지사는 체험관의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인력을 배치한다.

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11호에 따른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방체험관의 관리인력 배치기준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체험관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제7조(이용방법) 체험관은 사전예약제 또는 현장접수로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이용의 중지) 도지사는 시설 보수 등 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입장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애완동물 또는 혐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안전체험 센터에 한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체험관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5. 성희롱, 성추행, 불법촬영 등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체험관의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2장 안전체험센터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안전체험센터의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안전체험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명절(설과 추석을 말한다) 연휴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체험센터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 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안전체험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3장 수난체험센터

제13조(개관 및 휴관) ① 수난체험센터의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수난체험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명절(설과 추석을 말한다) 연휴

3. 매주 일요일

4. 그 밖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난체험센터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 수난체험센터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의 구성원
5.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훈련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3.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또는 그 자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손해배상)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가 체험관의 시설·물품 등을 훼손·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체험관의 시설·물품 등의 훼손·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자원봉사자) 도지사는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원봉사자에게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험관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난체험센터 이용료(제14조 관련)

일반수영

(단위 : 원)

| 구분 | 대 상 | | 이용료 | 비 고 |
|----|-------|------------|-------|------|
| 개인 | 1 회 권 | 성 인 | 3,000 | 현장접수 |
| | | 군인, 중·고등학생 | 2,000 | |
| | | 초등학생 이하 | 1,500 | |

수난안전체험

(단위 : 원)

| 구분 | 대 상 | | 이용료 | 비 고 |
|----|-------|---------|-------|------|
| 개인 | 1 회 권 | 초등학생 이상 | 5,000 | 사전예약 |
| 단체 | | | 3,000 | |

생존수영교육

(단위 : 원)

| 대 상 | | 이용료 | 비 고 |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되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 | | 12,000 | 사전예약 |

※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생존수영교육”이란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의 생존수영교육을 말한다.

충청북도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체계적인 안전체험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도민들의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응능력 향상

2. 비용발생 요인

- 충청북도 안전체험관 운영비 및 인건비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11조, 제13조(개관 및 휴관)
- 조례안 제14조(이용료)
- 조례안 제17조(보험가입)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정수반요인 : 체험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 인건비 산출근거 : 공무원 7명, 기간제 7명 / '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
- 운영비 산출근거 : '24년 예산편성: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나. 추계결과

- (세입) 수난체험센터 이용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발생산출과정
 - 이용료 산출과정 : 일반수영(3천원 x 4일 x 100명 x 9월) + 생존수영(12천원 x 21일 x 57명 x 7월) + 수난안전체험(5천원 x 21일 x 일2회 x 20명 x 2월)
- (세출) 체험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 인건비 산출과정 : 공무원(35,582천원 x 7명)+기간제(50,048천원 x 3명)+초단시간 기간제(14,484천원 x 4명) ※ '24년 3월배치 예정으로 계산

- 산출결과 : 6,087,433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 전년도 추계 비용의 약 3%씩 증가 예상

6. 작성자 : 충북안전체험관장 류광희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